

www.pwc.com/vn

PwC Legal 베트남 NewsLetter

2020년 8월 27일

투자법 (Law on Investment) 개정

At a glance...

현 투자법 2014를 대신하여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부 조항 '20년 9월 시행) 될 예정인 개정 투자법 (신 투자법)이 6월 17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주요 변동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사업분야 (Prohibited business sector) 및 조건부사업분야 (Conditional business sector) 대상 변경 - 베트남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모두 적용

채권 추심이 제한사업분야에 추가되었습니다.

현 투자 법 하, 조건부사업분야(투자자가 해당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사업 분야)는 27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 투자법에서는 일부 항목이 수정, 통합, 삭제 및 추가되어 227항목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사 중재 서비스(Commercial arbitration services)', '가맹업' 또는 '물류 서비스'는 조건부사업분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에너지 감사(Energy auditing)', '건축 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s)', '인터넷 도메인명 등록 및 유지 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전자 증명 및 인증 서비스(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ervices)', '해외 언론 배포 서비스', '민간 암호화 상품 및 서비스 거래(trading civil cryptographic products and services)', '어선 등록', 및 '어선 선원 훈련' 등의 항목이 조건부사업분야에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언급 조건 외, 외국인 투자자들은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장 진출 조건과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시장 진출 조건

신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시장 접근 조건”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 기준들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i) 외국인 소유지분, (ii) 투자 형태, (iii) 사업 활동 범위, (iv) 투자자(들)의 역량, (v) 관련 법률 및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명시된 기타 조건

베트남 정부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투자 절차 수행 대상 외국인 투자 지분 기준

현 투자법 제 23조 규정에서는, 법인 설립, 자본 출자, 지분/자본 양도, 또는 경영협력계약 (BCC) 방식의 투자 시, 다음과 같은 투자 지분 비중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투자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51% 이상의 정관 자본(Charter capital)을 외국인 투자자(들)가 보유한 경우 [F1];
- 51% 이상의 정관 자본(Charter capital)을 F1(들)이 보유한 경우 [F2]; 또는
- 51% 이상의 정관 자본(Charter capital)을 외국인 투자자(들)와 F1이 보유한 경우 [F2'].

신 투자법에서는 동 조항의 적용 기준이 기존 51%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계속

4. M&A 절차 간소화

신 투자법에서 M&A 결과 인수대상회사의 외국인 소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규정과 앞의 3번 규정에 따라, 인수대상회사의 외국인 소유지분율이 증가하거나, 외국인 투자자 (F1, F2, F2' 포함)들이 인수대상회사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만 (현 51% 대신), 인수대상회사는 등록/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5. 투자 승인 (Investment approval-in-principle)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국회의 승인권한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신 투자법에서는 총리와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권 하에 있는 투자 부문이 업데이트 및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 제조 또는 5조 동 이상의 투자 자본 프로젝트는 총리 승인대상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골프장은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대상으로 이관되었습니다.

6. 투자 인센티브

신 투자법에서 몇몇 프로젝트와 사업 부문이 투자 인센티브 대상 목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 혁신 개발/R&D 센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활동, 사회공공주택 건설 및 직업교육분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신 투자법에서는 투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관련하여, 법인세 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총 자본이 6조 동 이상이면서 허가 후 3년 내 자본금을 완납한 프로젝트들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는 매출 발생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최소 연 매출액 10조를 달성하거나 3,000명을 고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 투자법에서는 대규모 사회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7. 에스크로 대금에 대한 의무 보증

베트남 정부가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목적 변경 시,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보증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현재 명시된 에스크로 대금 그 자체에 대한 보증에 더하여)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 의무에 대한 은행 보증이 추가되었습니다.

Contact us

본 Newsletter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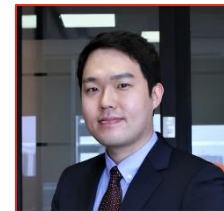
Richard Irwin
Partner - Tax & Legal services
+84 (28) 3824 0117
r.j.irwin@pwc.com



Lee Moo Yeol (이무열)
Directo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0
mooyeol.lee@pwc.com



Phan Thi Thuy Duong
Partner – Legal services
+84 (28) 3823 0796, ext. 1508
phan.thi.thuy.duong@pwc.com



Shim Jinbo (심진보)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shim.jinbo@pwc.com



Eva Jaworska
Partner– Legal services
+ 84 (28) 3824 0118, ext. 1510
eva.jaworska@pwc.com



Son Han Hee (손한희)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son.hanhee@pwc.com



Jo Su Jin (조수진)
Associate - Transfer Pricing & KBN
+84 (28) 3823 0796 Ext. 4630
jo.sujin@pwc.com

www.pwc.com/vn



facebook.com/pwcvietnam



youtube.com/pwcvietnam



linkedin.com/company/pwc-vietnam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7 countries** with over **276,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

©2020 PwC Legal (Vietnam) Co., Lt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